



노스 캐롤라이나 주  
평가 위원회

다음 주제에 관하여:

고위 당국 결정 번호.

수신:

원고

고용주

N.C.Gen.Stat. §96-15(e) 에서, 이 원인은 항소 사건표 번호. . 의 항소 심판 결정에 따른 **(원고의) (고용주의) 항소**를 검토하기 위해 평가 위원회 (“Board”)에 제출되었습니다. 기록이 고용 안전부의 항소 부서로 전달 되어 완전하게 검토되었습니다.

항소 부서는 이 문제에 대해 수행된 증거 청문회의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고 통보했습니다. 따라서, 위원회는 청문회에서 발췌한 증언을 검토할 수 없습니다.

앞서 언급된 바에 따라, 원인은 **새로운 청문회**를 열기 위해 항소 심판에 송환되어야 합니다.

상고 청문회가 끝나면 항소 심판은 기존의 결정을 내려놓고, 새로이 찾은 사실 및 법적 결론에 대한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. 이러한 사실 조사 결과에는 모든 이행 및 재착수의 순서, 재착수 사유, 재착수 명령의 요구 사항 요약, 그리고 이 문제에서 진행된 각 청문회에 참석한 당사자들과 증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절차적 이력이 명시되어야 합니다.

원인은 이 결정에 부합하는 추후 절차를 위하여 **송환**됩니다.

모든 이해 당사자는 심의회의 장소와 시간에 대해 정식으로 통고되어야 하며, 항소 심판은 이전에 할당된 모든 사건표 번호를 사용하여 청문회가 끝날 때에 새로운 결정을 식별해야 할 것이 명령됩니다.

**중요 - 다음 장을 보십시오**



이 결정에 대하여 항소 부서에 전달 된 반송 기록의 모든 문서는 전시물로 표시되고 법으로 요구되는 대로 기록을 완성하기 위하여 항소 심판이 기록에 입력하도록 청문회 통지와 함께 항소 심판에게 전달 될 것 역시 명령됩니다.

평가 위원회의 위원 Fred F. Steen, II 와 Stan Campbell 이 항소에 참여하여 이 결정에 동의합니다.

이.

평가 위원회

---

의장

**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통지**

04 N.C. Admin. Code 24A .0105(32) (고용주의 실업 보험 관리자로 일하는 제 3자의 개인 포함)에 정의된 법정 대리인은 면허가 있는 변호사이거나 N.C. Gen. Stat. Ch. 84 및 § 96-17(b). 에 따라 면허가 있는 변호사가 감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. 변호사 감독의 통지 및 / 또는 증명은 04 N.C. Admin. Code 24C .0504 에 따라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. **사법 절차의 법적 대리는 N.C. Gen. Stat. Ch. 84 를 준수하여야 합니다.**

04 N.C. Admin. Code 24C .0504 에 의거하여, 당사자에게 법정 대리인이 있는 경우,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모든 서류 또는 정보는 법정 대리인에게만 발송됩니다. 당사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제공 되는 모든 정보는 당사자에게 직접 발송된 것과 동일한 효력과 영향을 가집니다.

**2013 년 6 월 30 일 이후에 제기 된 클레임의 경우, 원고는 이후 항소에서 취소된 행정 또는 사법 결정에서 수령된 급여의 상환 대상이 됩니다. N.C. Gen. Stat. § 96-18(g)(2).**

항소 제기:

결정 전달: